

<양성평등기본법>에 스며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 교수/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

I. 들어가면서

「양성평등기본법」(2015)은 「여성발전기본법」(1995)을 전면 개정한 법으로써 법 제정 및 개정의 배경은 1995년 북경에서 열렸던 제4차 세계여성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경 유엔 4차 세계여성대회 참석 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여성 관련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성발전기본법」(1995)이 제정되었고 여성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여성 중심의 정책 및 법안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같이 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Women in Development: WID)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추구(Gender and Development: GAD)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개정된 법이다. 「양성평등기본법」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차인순은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삭제하고 양성평등 문제를 중심에 놓아 성불평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와 문화의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¹⁾ 즉,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과 여성의 역량을 발전대상으로서 정책화한 법이라고 한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것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양성평등기본법」은 가부장제 타파를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라는 2세대 페미니즘의 기본 목표를 정책적으로 실현시키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의 기본 방향성과 목적은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발표된 선언문과 행동강령과 일치한다.

본 논고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의 배경이 되는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1) 차인순. “「양성평등기본법」의 의미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여성정책연구회.』 2015.7.18. 3250.

II.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배경: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페미니스트들이 전략적으로 장악한 회의로서 페미니즘 이념을 하나의 체계화된 전략으로서 전지구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교두보적 역할을 한 회의이다.²⁾ 이 대회는 회원국 정부 간 공식회의와 NGO 포럼으로 나뉘어 열렸는데, 전 세계 189개국 정부대표, 민간단체 대표, 유엔 관련 기구, 언론인 등 약 5만 명이 참가한 대회로 여성대회의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³⁾ 그 중 NGO 포럼에는 3만 명의 여성대표가 참석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활발히 전개된 페미니즘 운동이 그 배경에 있다. 그리고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는 여성권리 증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회의였다고 볼 수 있다. 북경 행동강령에도 NGO 단체들과 페미니스트 그룹이 정책 방향 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⁴⁾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의 핵심 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성 주류화 전략 실행 권고, 2)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을 여성의 인권으로 선포, 그리고 3) 젠더 용어 공식적 사용 결의이다.

1. 성 주류화 전략 실행 권고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그동안 여성권리 증진에 초점을 맞췄던 여성대회의 방향을 성불평등의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목표로 삼고 그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GM)’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경 행동강령은 ‘성평등’을 각 국가가 실현해야 할 정책목표(gender equality as a goal)로 결의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 주류화 전략을 채택했다. 199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성 주류화의 개념정의를 다음과 같다:

성 주류화는 . . .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에서 입법,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계획된 행동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과 남

2) Correa S, Germain A, Sen G. “Feminist mobilizing for global commitments to th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of women and girls.” *Women and Girls Rising: Progress and Resistance around the World*. Ed. E Chesler, T McGovern. London: Routledge, 2016. 51-68.

3) 강선혜.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성과 및 평가: 『북경+10』 성과 및 평가.” 『젠더리뷰』. 8.4(2005):

4) Paragraph 26. United Nations. Report on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ember 1995. p.12.

성의 관심과 경험을 모든 정치, 경제 및 사회 영역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이익을 얻고 불평등이 영속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성 주류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다.⁵⁾

즉, 성 주류화란 북경 행동강령에 따라 실시되기 시작한 모든 정책을 각 나라의 입법, 정책, 또는 프로그램 등에 포함시킴에 있어서 남녀의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다. 이 대회에서 결의된 성 주류화 정책은 1990년대 이후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인권의 세계화와 함께 국제회의의 보편적 주제로 설정되어 수용되고 있으며, 이로써 여성문제에 대해 유엔이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회원국들은 유엔의 성 주류화 전략을 기반으로 여성정책의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이로써 페미니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각 나라의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2.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을 여성의 인권으로 포장⁶⁾

이 대회의 키워드는 ‘여성의 인권’(women's rights)이었으며, 당시 미국 대표로 참여한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연설 중 ‘인권은 여성의 권리이며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Human rights are women's rights, and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라는 선언에 드러나듯이 이 대회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과 동일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⁷⁾

그러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외침 이면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을 “분열할 수 없고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인권”⁸⁾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었다.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대회가 세계적인 인구통제 정책을 여성 개인의 재생산권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1995년 4차 세계여성대회는 재생산권을 여성의 인권으로 선포하였고 더 나아가 ‘성적 자기 결정권’도 여성의 인권에 포함시킴으로써 서구의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공식적 발판 역할을 했다.

5) <http://www.un.org/womenwatch/osagi/pdf/ECOSOCAC1997.2.PDF>.

6) Paragraph 95, 96. United Nations. Report on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ember 1995. p.36.

7) <https://www.un.org/esa/gopher-data/conf/fwcw/conf/gov/950905175653.txt>.

8) Charlotte Bunch and Susana Fried. "Beijing '95: Moving Women's Human Rights from Margin to Center."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2.1(1996): 200–4.

페미니스트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 이면의 숨은 뜻을 간파한 바티칸 교황청은 이 용어들의 불분명한 의미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줄 수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교황청은 행동강령에 명시된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이 결코 낙태나 피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은 동성애 혹은 결혼 이외의 관계에 결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였다.⁹⁾

3. ‘젠더’를 공식 용어로 사용 결의

‘젠더’ 용어는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의되었고, 이후 ‘젠더’ 어젠다가 여성계의 중심 과제 및 전략이 되었다. 젠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세계여성대회이다.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세계여성대회는 ‘발전 속의 여성(WID)’ 접근법이 여성의 상황을 다소 개선했지만 남녀 관계의 구조적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념인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GAD)’을 제시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WID 접근과는 달리, GAD는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가부장적 규범, 제도, 및 구조적인 질서를 문제 삼았다. GAD는 성 불평등이 불평등한 사회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며, 남녀의 구조화된 성별 관계(젠더 관계)를 재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젠더’라는 개념이 수면 위로 등장했다.¹⁰⁾ 그리고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는 비로소 젠더를 공식적인 정책 용어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교황청은 행동강령에 등장하는 젠더 용어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였는데 젠더의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양성의 해체를 우려하면서 젠더는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만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다(<첨부 2> 참조).¹¹⁾

결국 페미니스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행동강령이 공표되었고 교황청과 일부 회원국들은 행동강령의 일부 사항에 대한 유보를 표하였다. 그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가족,’ ‘젠더’ 등 여러 불분명한 표현들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9) 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the Holy See, United Nations, Report on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ember 1995, 159-162. <https://www.un.org/womenwatch/daw/beijing/pdf/Beijing%20full%20report%20E.pdf>.

10) 마경희.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23.1(2007): 39-67.; 배은경.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32.1(2016): 1-45.

11) 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the Holy See, United Nations, Report on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ember 1995, 159-162. <https://www.un.org/womenwatch/daw/beijing/pdf/Beijing%20full%20report%20E.pdf>.

이러한 용어에 대한 그들의 정의를 명시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유보시키는 조건하에 행동강령이 발표되었고 이로써 페미니즘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전지구적으로 본격화되었다.

III.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문제점

1. 「양성평등기본법」과 성 주류화 전략

우리나라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참석 이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 유엔이 결의한 성 주류화 전략을 여과 없이 수용하면서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했다. 그리고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성 주류화의 법체계를 정비했다.

1)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한 성 주류화 조치 규정 체계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목적 중 하나는 성 주류화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¹²⁾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의 제14조부터 제19조(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조)에 성 주류화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성 주류화 조치 규정을 체계화하였다. 입법·행정·사법 영역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는 성 주류화 조치 규정(제14조)을 신설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4G)인 성별영향평가(제15조), 성인지 예산(제16조), 성인지 통계(제17조), 성인지 교육(제18조) 조항을 보완 및 정비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국가성평등지표와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고, 매년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 및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발전 추이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네 가지 도구(4G)를 실행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제5장 제45조)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제5장 제46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 및 개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나타난 성 주류화 전략 실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양한 ‘법령과 . . .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제14조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로 구분한 통계인

12)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7284호, 2021.05.19. 일부개정.

성인지 통계(제17조)를 산출해서 관련 기관에 보급한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통계는 여성이 사회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등이 얼마나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통계를 참고하여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한다(제16조).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0년 29개 중앙행정기관의 195개 사업을 대상으로 7조 5000억원 규모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7년 350개 사업을 대상으로 29조원, 2018년도는 354개 사업에 33조원, 그리고 2021년 현재는 304개의 사업에 35조원이나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성평)에서는 공무원과 학교에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 연구 및 강사 양성을 담당한다. 이렇게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도구를 유기적으로 실행시킬 때 비로소 그들이 목표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성 주류화 전략의 문제점

(1) 모호한 성인지 감수성 용어의 사용

성 주류화 전략을 실행시키는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는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용어의 모호성에 있다.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남녀간 성별 불평등과 차별을 인지해 내는 민감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감수성은 민감하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의미로서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확립된 기준도 없기 때문에 성차별과 성별 불평등을 감지해내는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양성평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를 근거로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국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지하라는 성인지 교육은 여성에게 피해의식을 강요할 뿐 양성평등은커녕 오히려 남녀의 갈등만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양성평원은 현재 문제되는 남녀의 갈등 악화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의 부재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성인지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교육에까지 깊이 침투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 남녀차별과 기계적인 여성할당제

성 주류화 전략의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 모든 현상을 남녀차별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도구인 성별영향평가는 사회 모든 영역을 남녀차별의 시각으로

분석, 연구, 데이터화하며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명목으로 능력과 관계없이 강제적인 여성할당제를 강요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이 아닌 기계적이고 절대적인, 공산주의적인 평등을 조장한다. 결국 남녀의 타고난 차이와 특성을 무시하고 여성에게 특별한 혜택을 더 주거나 더 배려해줌으로써 결과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에 도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다.

(3) 잘못된 성인지 예산의 사용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인지 예산 사용의 부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이다.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편성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차별 없이 국가 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서(성별영향평가) 기존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 예산이 특정성별에 쏠리는 정책을 보완하거나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현재 35조나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

성차별을 없애겠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들이 자금줄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 부처들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을 포함시키거나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도 수혜 대상자를 성별로 나눠 표기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등 예산이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다.

부적절한 성인지 예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분류 기준이 국제적·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 투입의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부재를 지적하였다.¹³⁾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정부 재정사업이 성평등하게 개선되면 국가성평등지수는 향상되고, 반면에 국가성평등지수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사이에 연계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¹⁴⁾

2. 「양성평등기본법」과 젠더 용어의 사용 논란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법률의 이름을 “성평등”으로 할 것인지 “양성평등”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큰 논쟁거리였다. 이는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내포되어 있는 젠더가 남녀의 의미를 넘어서 제 3의 성과 동성애를 포함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13)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20.10. pp.13-14.

14)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20.10. p.25.

이와 관련해서 2014년 당시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내용적으로 같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1980년 헌법 개정에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참여정부부터 양성평등을 공식적으로 사용해 온 반면, 여성정책가들이나 여성학자들은 성평등을 더 보편적으로 사용해왔지만 결국 두 가지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¹⁵⁾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성평등 용어 사용여부에 대한 논쟁은 결국 젠더 개념의 모호성 때문이다. 1950년대 이후 젠더 용어가 등장한 후 젠더 개념은 페미니즘을 통해 본격적으로 차용되었으며, 1990년대 젠더주의의 등장으로 젠더 개념이 바뀌었다. 다음 부분에서 젠더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페미니즘과 젠더

“젠더” 용어는 1950년대 존스 홉킨스병원의 성 심리학자였던 존 머니에 의해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서 확산되었다. “젠더”란 일차적으로 생물학적인 성(섹스)과는 구분되는 사회적인 성을 의미한다. 즉, 태어난 후에 나타나는 성별 성향과 특징 전반을 젠더라고 부른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보여지는 성별 특성은 타고난 성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섹스와 젠더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젠더 개념은 60년대 이후 여성운동과 함께 페미니즘적 색깔을 덧입게 되었다. 타고난 생물학적 특징과 그에 따른 결과(임신과 출산)를 거부하는 2세대의 급진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억압과 불평등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문제(가부장제)로 돌리는데 있어서 후천적 특징 및 성향을 지칭하는 “젠더” 개념이 매우 유용했다.¹⁶⁾ 단순히 사회적인 성을 의미했던 젠더는 페미니즘적 시각이 덧입혀지면서 “성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성 혹은 남성성”이라는 의미로 굳혀졌다.

2세대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원인은 결국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이며, 그 차이는 바로 임신과 출산 여부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성의 몸(섹스)은 임신과 출산, 양육(모우수유)를 통해서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여자가 되도록(젠더)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스트의 대모인 시몬 드 보부아르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가 의미하는 바이다.

15) 차인순. 「양성평등기본법」의 의미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여성정책연구회. 2015.7.18. 3249-3277. 3255.

16) 원래 “젠더” 개념은 1950년대 성과학자 존 머니(John Money)에 의해서 트랜스젠더리즘과 간성(intersex)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면서 실제 타고난 성과는 구분되는, 후천적인 영향(수술 혹은 훈련)에 의해 바뀐 성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서 섹스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용어가 필요했고, 언어학 문법의 범주 내에서만 사용되던 “젠더”를 성과학연구 논의에 도입시켰고, 이를 기점으로 후천적인, 혹은 사회적인 성의 의미로 정착되었다.

요컨대, 2세대 페미니즘은 생물학적인 차이(섹스)에서 성불평등의 원인을 찾았고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여성은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불평등을 겪으며 여성으로서의 특정한 행동과 성향을 강요당한다고(젠더) 주장한다. 즉, 페미니즘에 의하면 타고난 성(섹스)을 기반으로 해서 젠더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타고난 성을 거부함과 동시에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규정된 젠더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 젠더주의와 젠더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젠더가 포스트모더니즘과 결합되면서 의미가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개념 전환의 중심에는 포스트모던 철학자 및 교수이자 레즈비언인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있다.

버틀러는 그녀의 대표 저서인 『젠더 트러블』(1990)을 통해서 페미니즘의 이분법적인 젠더 개념에 문제(trouble)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젠더 개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의 1999년 서문에 본 저서의 목적이 이분법적 젠더 개념을 해체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젠더 표현을 거짓된 것, 혹은 파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다른 형태의 젠더 표현을 진리(truth), 혹은 원래의 형태(original)로 것으로 규정 해버리는 진리의 체제들에 반대했다. . . . 본 저서의 목적은 특정한 형태의 젠더만 실재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젠더에 대한 가능성의 영역을 여는 것이었다. 본 저서는 또한 소수의 (비이성애적) 젠더 관행과 성적 관행을 비합법화하기 위해 진리라는 담론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모든 노력을 약화시키려 했다.”¹⁷⁾

위에서 말하는 “특정한 형태의 젠더”란 그 동안 사회에서 통용되던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애적 의미의 젠더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의미에서 벗어나 “젠더에 대한 가능성의 영역”을 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비이성애적) 젠더 관행과 성적 관행”의 영역까지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성애 중심의 사회를 진리로 규정짓는 것은 단지 이 사회의 담론에 불과하며 그 “진리라는 담론의 권력”이 비이성애자들과 규범에서 벗어나는 성적 행위를 비합법화 해버렸다고 비판한다. 이렇듯 버틀러는 이성애 중심 사회체제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그 남녀 두

17)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New York, 1999. viii.

개의 성 이외의 다른 형태를 합리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버틀러는 젠더를 단순히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그녀는 “성적 행위(sexual practice)는 젠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젠더란 “불안정화” 될 수 있고, 반복적인 성적 행위 혹은 성적 표현을 통해서 변형 가능한 성질의 것으로 전락시켜버렸다.¹⁸⁾ 그녀의 젠더에 대한 왜곡된 해석은 당시 학계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로써 기존에는 남녀만 의미했던 젠더가 비이성애적 행위와 관행을 아우르는 퀴어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3)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젠더”

이러한 개념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었고 “젠더” 용어가 비로소 공식 용어로 채택된 것이다. 그럼 북경 세계대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의한 “젠더”의 의미와 이 용어 사용과 관련한 당시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북경 행동강령은 “여성의 권리는 인권(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임을 선언했고 사회 전반에 남녀의 시각과 경험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성 주류화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총 12개 부문의 의제(여성과 빈곤, 여성과 교육·훈련, 여성과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경제,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인권,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환경, 여아)를 통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및 각 부문에 대해 회원국이 정책이나 규정을 만들어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남성과 동일하게 반영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실시하도록 각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여성회의에서 “젠더”가 총 16회 사용되었으나 북경회의에서는 200회 넘게 사용되었는데,¹⁹⁾ 여성의 역량강화 및 실질적 양성평등 논의의 맥락 속에서 사용된 점을 고려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페미니즘적 젠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교황청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젠더”의 불분명한 개념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표하였다

18) Ibid., xi.

19) Lorraine Corner. “Strategies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Capacity Building for Gender Mainstreaming.” A paper presented at 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1999. Oct. 26-29, Bangkok, Thailand.

(expresses a reservation). 특히 교황청은 “젠더” 용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황청은 “젠더”라는 용어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적 정체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행동강령 자체는 “두 개의 성”(both genders)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사용한다. 따라서 교황청은 성적 정체성이 새롭고 다른 목적에 맞게 무한정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계관에 근거한 의심스러운 해석은 배제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두 성별의 모든 역할과 관계가 하나의 정적인 패턴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생물학적 결정론적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²⁰⁾

“젠더”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표명과 관련하여 프랑스와 지라르(Françoise Girard)는 교황청이 당시 페미니스트와 성적 자기 결정권 옹호론자들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젠더의 “숨겨진 의미”에 대한 교황청의 주장은 성(sexuality)에 관한 현대의 논쟁에 대해 교황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협상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정부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사실상 “여성”의 대체 용어로서 현대의 정치적 용법에 따라 “젠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교황청은 생물학적 성으로부터 성의 사회적 역할, 정체성 및 표현을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찌감치 간파했다.²¹⁾

퀴어 젠더 이론의 선두에 있는 버틀러는 『젠더 허물기』(Undoing Gender)(2004)에서 교황청이 성을 생물학적으로만 이해하려는 편협함을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만약 바티칸이 젠더 용어를 섹스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티칸이 성별 차이(sexual difference)를 다시 생물학적으로만 접근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즉, 재생산(reproduction)은 여성의 사회적 운명이라는 생물학적으로 편협한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것이다.”²²⁾

북경대회 당시 교황청을 중심으로 불문명한 “젠더” 개념으로 인한 의미 왜곡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당시 북경 세계여성대회 총회장은 젠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1996년 젠더에 대한 공식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ember 1995. A/CONF/177/20/Rev.1 p.162. 젠더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문 전문은 <첨부 2>를 참고할 것.

21) Françoise Girard. "Negotiating Sexual Rights and Sexual Orientation at the UN" SexPolitics: Reports from the Frontlines. Eds. Richard Parker, Rosalind Petchesky and Robert Sember. Rio De Janeiro: Sexuality Policy Watch, 2015. 311-358. 322.

22) Judith Butler. Undoing Gender. New York: Routledge, 2004.

(1) "젠더"라는 단어는 다른 수많은 유엔 포럼과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해되었다; (2) 이 용어에 어떠한 새로운 의미나 함축적 의미도, 원래 통용되어 사용되던 용도와는 다르게 의도했음을 나타내는 조짐은 전혀 없었다.²³⁾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북경 행동강령에 동성애를 지칭하는 표현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북경대회 당시 성적 지향과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프랑수아 지라르(Françoise Girard)에 의하면 행동강령 초안 작성 당시 성적 지향 용어가 삽입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삭제되었으며, 북경 세계여성대회 당시 NGO 동성애 단체에서 “레즈비언의 권리는 인권이다”라는 뜻을 크게 보이며 동성애의 권리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베벌리 팔레사 디시(Beverly Palesa Ditsie)가 레즈비언 대표로서 북경대회에서 여성의 인권과 함께 레즈비언의 인권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²⁴⁾²⁵⁾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전에도 유엔 차원에서 동성애 관련 논의는 진행되고 있었다. 1990년에 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시켰고, 1994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은 인권 침해라고 명시했는데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같은 해에 LGBTI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북경대회 당시 젠더 개념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성평등”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2014년도에는 「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성평등”을 순수하게 “양성평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2007년에는 국제 인권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욱자카르타원칙이 발표되었고, 유엔은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같은 해에 각 회원국들에게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시킨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강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발의된 평등법안 개념조항에 성별(젠더)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노골적으로

23)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ember 1995. A/CONF/177/20/Rev.1 p.218. 젠더 개념에 대한 세계여성대회 총회장의 성명서 전문은 <첨부 3> 참조할 것.

24) Françoise Girard. "Negotiating Sexual Rights and Sexual Orientation at the UN" SexPolitics: Reports from the Frontlines. Eds. Richard Parker, Rosalind Petchesky and Robert Sember. Rio De Janeiro: Sexuality Policy Watch, 2015. 311–358.

정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은 분명히 양성평등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IV. 나가면서

이미 젠더는 기존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남녀의 구분조차 무의미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용어로 전락해버렸다. 그런데 이 용어가 현재 법률과 여러 정책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왔으며 때로는 한글 번역 없이 “젠더”로 표기되기도 한다(젠더 규범, 젠더 기반 폭력, 젠더 갈등 등).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양성평등 용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배경 행동강령에서 가져온 용어들인 “성 주류화,” “성인지,” “성평등,” “성평등지수”는 젠더를 사용한다. 모호한 젠더 개념의 위험성은 이미 확인된 바 양성을 의미할 때에는 “젠더,” 혹은 “성”이 아닌 “양성”이라고 명시하고, 모든 정책에서 “젠더”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름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의미하며, 각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 속에서 서로 보완해 가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다. 그리고 이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 1> 「양성평등기본법」의 성 주류화 조치 관련 조항(제14조-제19조)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 3. 27.>[제목개정 2018. 3. 27.]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여성가족부장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

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첨부 2> 유엔 북경 제4차 여성대회에서 “젠더” 개념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²⁶⁾

이 문서에서 "젠더"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유엔 문맥에서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교황청은 그 단어가 존재하는 언어에서 그 단어가 갖는 일반적인 의미에 동의한다. 교황청은 "젠더"라는 용어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적 정체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행동강령 자체는 "두 개의 성"(both genders)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사용한다.

따라서 교황청은 성적 정체성이 새롭고 다른 목적에 맞게 무한정 적응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계관에 근거한 의심스러운 해석은 배제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두 성별의 모든 역할과 관계가 하나의 정적인 패턴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생물학적 결정론적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성과 상호보완성을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여성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의견에 박수를 보냈고, 문화적 조건이 여성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정도를 강조했다며, 남성들에게 "여성해방의 위대한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을 권고했다.

교황은 최근 "여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의 미묘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러한 다양성이 자의적인 부담의 결과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에 특정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특정한 역할의 다양성이 여성에게는 결코 해롭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원문) Statement of interpretation of the term "gender"

26)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ember 1995. A/CONF/177/20/Rev.1 p.162.

In accepting that the word "gender" in this document is to be understood according to ordinary usage in the United Nations context, the Holy See associates itself with the common meaning of that word, in languages where it exists.

The term "gender" is understood by the Holy See as grounded in biological sexual identity, male or female. Furthermore, the Platform for Action itself clearly uses the term "Both genders".

The Holy See thus excludes dubious interpretations based on worldviews which assert that sexual identity can be adapted indefinitely to suit new and different purposes.

It also dissociates itself from the biological determinist notion that all the roles and relations of the two sexes are fixed in a single, static pattern.

Pope John Paul insists on the distinctiveness and complementarity of women and men. At the same time, he has applauded the assumption of new roles by women, stressed the degree to which cultural conditioning has been an obstacle to women's progress, and exhorted men to assist in "the great process of women's liberation" ("Letter to Women", 6).

In his recent "Letter to Women", the Pope explained the Church's nuanced view in the following way: "One can also appreciate that the presence of a certain diversity of roles is in no way prejudicial to women, provided that this diversity is not the result of an arbitrary imposition, but is rather an expression of what is specific to being male and female."

<첨부 3> 별첨 IV: "젠더"라는 용어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의미에 대한 총회장의 성명²⁷⁾

1. 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기구로 활동 중인 제19차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서는 회의 행동강

27)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ember 1995. A/CONF/177/20/Rev.1 p.218.

령에서 젠더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관인 셀마 아시팔라(나미비아)씨를 위원장으로 하여 뉴욕에 접촉 그룹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비공식 접촉 그룹에게 행동 플랫폼의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젠더"의 의미에 대한 합의를 구하고 베이징에서 열리는 총회에 직접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2. 이 문제를 철저히 고려한 후, 접촉 그룹은 (1) "젠더"라는 단어가 다른 수많은 유엔 포럼과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해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2) 이 용어의 어떠한 새로운 의미나 함축적 의미도, 승인된 이전 용도와는 달리 행동강령에 의도된 것이라는 징후는 없었다.

3. 따라서, 접촉 그룹은 행동강령에서 사용되는 "젠더"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되도록 의도되었음을 재확인했다. 접촉 그룹은 또한 현재의 보고서는 총회의 의장이 의장의 성명으로 발표해야 하며 그 성명은 총회의 최종 보고서의 일부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영문)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CONFERENCE ON THE COMMONLY UNDERSTOOD MEANING OF THE TERM "GENDER"

1. During the 19th meeting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acting as preparatory body for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an issue arose concerning the meaning of the word "gender" in the context of the Platform for Action of the Conference. In order to examine the matter, the Commission decided to form a contact group in New York, with the Commission's Rapporteur, Ms. Selma Ashipala (Namibia), as Chairperson. The Commission mandated the informal contact group to seek agreement on the commonly understood meaning of "gender" in the context of the Platform for Action and to report directly to the Conference in Beijing.

2. Having considered the issue thoroughly, the contact group noted that: (1) the word "gender" had been commonly used and understood in its ordinary, generally accepted usage in numerous other United Nations forums and conferences; (2) there was no indication that any new meaning or connotation of the term, different from accepted prior usage, was intended in the Platform for Action.

3. Accordingly, the contact group reaffirmed that the word "gender" as used in the Platform for Action was intended to be interpreted and understood as it was in ordinary, generally accepted usage. The contact group also agreed that the present report should be read by the President of the Conference as a president's statement and that the statement should be part of the final report of the Conference.